

법률 및 규정

주 법무부장관의 인사말

우리 부서에서는 당신이 일터에서 가지는 권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.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노동자는 임금보장 외 다른 여러가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



이 안내서가 다루는 내용은:

- 임금의 수준
- 임금이 언제, 또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
- 휴가를 쓸 권리
- 미성년 노동법
- 임시직원의 권리
- 그 외 다양한 정보

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법을 집행합니다. 이민법상 신분이 어떠한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. 법 또는 권리에 대한 문의가 있거나, 불만을 접수하려면 연락주십시오. 불만 접수는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데 동의했거나 고용주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할 수 있습니다.

홈페이지 방문 또는 공정노동법 핫라인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세요.

Fair Labor Division (공정노동법 부서)
www.mass.gov/ago/fairlabor
(617) 727-3465
TTY 617-727-4765
통화가능시간: 10 a.m. - 4 p.m. (월-금)

법무부장관
모우라 히일리

최저 임금

M.G.L. Ch. 151, § 1, 2, and 2A

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모든 노동자는 근무자의 대우를 받으며, 대부분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인 시급 \$10.00 이상을 보장받습니다.

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**\$11.00**로 인상됩니다

팁을 받는 근로자

M.G.L. Ch. 151, § 7; M.G.L. Ch. 149, § 152A

서비스업 종사자, 바텐더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“서비스직 요율”로 시급 **\$3.35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요율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적용됩니다:

- 팁으로 월 \$20.00 이상의 수입이 생기고
- 시간당 받는 팁의 평균금액과 서비스직 시급을 더한 값이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더 클 경우

2017년 1월 1일부터 서비스직 요율은 **시급 \$3.75**로 인상됩니다.

매니저 또는 감독관, 고용인은 팁을 어떤 형태로든 가져갈 수 없습니다.

계산서에 명시된 팁 또는 서비스 수수료는 피고용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직 종사자 및 바텐더 등 그외 서비스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. 서비스직 종사자 간의 공동 팁(tip pooling) 운영도 가능합니다.

초과근무

M.G.L. Ch. 151, § 1A and 1B

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일반 시급의 최소 1.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. 팁을 받는 “서비스직 요율”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의 최소 1.5배가 되어야 합니다.

예외: 몇몇 직종 및 근무지는 초과근무가 면제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www.mass.gov/ago/fairlabor에서 찾아보거나, 공정노동법 핫라인으로 전화 (617) 727-3465.

급여 지급

M.G.L. Ch. 149, § 148

급여 (또는 임금)는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지불하고 팁, 휴가수당, 공휴일수당 및 수수료도 포함합니다.

시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에게는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 급여를 지급합니다. 지급 기한은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 6-7일 이내로, 일주일동안 피고용인이 근무한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일을 그만두는 피고용인은 다음 지급일 또는 다음 토요일(정해진 지급일이 따로 없을 경우) 까지 지급이 완결되어야 합니다. 해고 또는 해직이 되는 직원은 근무한 마지막 날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
근무 시간

454 C.M.R. 27.02

근무 시간은 다음을 모두 포함합니다:

- 근무지 또는 어떤 장소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, 그리고
- 기본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일해야 하는 경우.

급여 공제

M.G.L. Ch. 149, § 148

고용인은 고용인의 사무용품 또는 장비 피해 등의 일반 사업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주거 및 식사비용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선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
고용인의 보복행위 금지

M.G.L. Ch. 149, § 148A; M.G.L. Ch. 151, § 19

고용인은 피고용인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처벌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.

이는 이민법상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근무자에게 해당됩니다. 고용인이 밀입국 노동자가 (노동법) 위반사항에 대해 불평을 한다고 그를 이민당국에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고 위협할 경우, 고용인은 기소 또는/그리고 민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급여명세서 및 급여에 관한 정보

M.G.L. Ch. 149, § 148; M.G.L. Ch. 151, § 15

급여와 함께 다음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:

- 피고용인 및 고용인의 이름
- 급여지급일 (월, 일, 년)
- 근무기간동안 근무한 시간 및 시급
-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급여공제 또는 급여인상

고용인은 급여명세서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 근무자는 합당한 시간 및 장소에서 본인의 급여기록 및 명세서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식사 휴식

M.G.L. Ch. 149, § 100 and 101

6시간 이상 근무하는 피고용인은 대부분 30분의 식사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. 이 시간에는 모든 업무로부터 자유하고, 자리를 비워도 됩니다. 이 시간은 무보수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식사휴식 동안 근무하기로 동의할 수 있으나, 그 시간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.

18세 미만 근로자

M.G.L. Ch. 149, § 56 -105

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고용인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주 및 연방법을 지켜야 합니다. 이 법은 미성년자가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그리고 얼마동안 일할 수 있는지, 또 하면 안되는 일은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. **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모두 취업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.**

피고용인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

M.G.L. Ch. 149, § 150

임금 또는 근무시간에 관한 법을 위반한 고용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피고용인은 개인적으로, 또는 유사한 불만을 가진 직원들끼리 집단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 승소한 피고용인들은 체불임금 및 3중 피해, 변호사 수수료 및 재판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중요! 소송의 제기 시한은 엄수되어야 합니다: 보통 위반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.

법률 및 규정

더 궁금하세요? 소송은 복잡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 방문 또는 (www.mass.gov/ago/fairlabor) 공정노동법 핫라인 617-727-3465 을 연결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병가

M.G.L. Ch. 149, § 148C

근무한 30시간 당 1시간을 병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. 연간 40시간까지 병가로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근무시작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병가는 당신(또는 당신의 자녀, 배우자, 부모님 및 배우자의 부모)가 **아프거나, 부상을 당했거나, 정기건강검진**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.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의 가정폭력도 병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직원이 11명 이상 될 경우 고용인은 반드시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. 11명이 안될 경우 병가를 제공하지만 유급이 아니어도 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: www.mass.gov/ago/earnedicksicktime

출근 수당

454 C.M.R. 27.04

3시간 이상 근무할 계획이었을 때,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저 3시간에 대해 최소임금보다 적지 않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:

- 제 시간에 출근하였고
- 기대했던 근무시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.

비정규직의 알 권리에 관한 법

M.G.L. Ch. 149, § 159C

비정규직 등의 인력 알선업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부서로 전화 617-626-6970 또는 방문 www.mass.gov/dols.

가사 근로자 보호법

M.G.L. Ch. 149, § 190

가사, 청소, 육아, 요리, 가정관리, 노인부양 및 그 외 유사업무 종사자는 노동법상 추가적인 보호법 조항이 있습니다. 다음을 방문하여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. www.mass.gov/ago/DW

가정내 폭력 휴가

M.G.L. Ch. 149, § 52E

당신 또는 가족이 가정폭력, 성희롱, 스토킹 또는 유괴의 피해자일 경우 **15일**간의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하여 다음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:

- 의료 서비스, 상담 또는 피해자 서비스
- 안전한 주거지 확보
- 자녀의 양육
- 법적인 도움 등의 보호 명령, 소송 제기

이 법은 직원이 50명 이상 되는 고용인에게 적용됩니다.

사소한 필요에 의한 휴가(SNLA)

M.G.L. Ch. 149, § 52D

12개월에 한번 24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음의 사유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:

- 자녀의 학교 활동
- 자녀의 병원예약
-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노인의 병원예약 및 그외 노인부양에 필요한 예약 건.

직원이 50명 이상 되는 고용인일 경우 이 휴가를 제공하며, 이 때 피고용인은 이 근무지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을 근무했어야 합니다.

고용인의 차별금지

M.G.L. Ch. 149, § 105A; M.G.L. Ch. 151B, § 4

일반적으로, 고용인은 당신에게 동일하거나 동등하게 여겨지는 업무를 하는 다른 성별의 피고용인보다 더 적은 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.

고용과정, 급여지급 또는 그 외 보상 및 근무조건을 다음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:

- 민족, 피부색, 종교, 국적, 혈통
- 성별, 성취향 또는 성적체성 및 표현
- 유전 정보 또는 유전 장애
- 나이
- 군필 여부

참고 사이트

급여 또는 근무시간에 관한 문의

주법무부장관 모우라 히일리 사무실
공정노동법 부서

(617) 727-3465
(617) 727-4765 (TTY)
www.mass.gov/ago/FairLabor
www.massworkrights.com
www.laborlowdown.com

미국 임금근로시간청
866-4-USWAGE
877-889-5627 (TTY)
www.dol.gov/whd

매사추세츠 주의 근로기준법 부서
(617) 626-6975
www.mass.gov/dols

근무지에서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문의

미국 산업안전보건청 (OSHA)
(617) 565-9860
www.osha.gov

매사추세츠 주의 산재 부서 (DIA)
www.mass.gov/dia
(617) 727-4900

매사추세츠 주의 보건부서 (DPH)
(617) 624-6000
www.mass.gov/dph

차별보호법에 관한 문의

주법무부장관 모우라 히일리 사무실
시민권법 부서
(617) 727-2200
www.mass.gov/ago/civilrights

매사추세츠 주의 차별금지협약 (MCAD)
(617) 994-6000
www.mass.gov/mcad

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 (EEOC)
(617) 565-3200
www.eeoc.gov

주법무부장관 모우라 히일리
사무실
MAURA HEALEY

**직장에서의 권리와
책임 안내**



COMMONWEALTH OF MASSACHUSETTS

One Ashburton Place
Boston, MA 02108
(617) 727-3465
www.mass.gov/ago